지원기업 선정 통합공고 표준양식

2025년도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시업(각형) 지원기업 모집 통합공고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사업의 지원사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울산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 ㅇ (사 업 명) 전기차 각형 이차전지 소재부품 실증화 센터 구축사업
- ㅇ (지원규모) 장비운영을 통한 직접지원
 - * 사전협의를 통해 울산TP 보유 장비 및 인프라로 지원 가능여부 검토 필요
- (지원기간) 2025. 2. ~ 2025. 8. (7개월)

2. 지원대상(신청기업)

- (지원자격) 이차전지산업 전·후방 연관 소재·부품 분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 가산점 부여 : 울산지역 내 소재하거나 이전 예정인 중소기업(입주 예정 기업은 지원기간 이내 증빙자료 제출 필수)
- o (신청자격 요건)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구 분		신청자격 요건					
공통	1	•「지역중소기업법」상의 지역중소기업 (중소기업 ¹⁾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²⁾)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2	· 사업장소재지가 신청 프로젝트 해당 시·도에 소재하는 기업					
개별	3	• 프로젝트별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는 기업 (선택한 프로젝트에 한함) * 시·도별 참여기업 선정계획 공고 참조(프로젝트별 대상, 업종·산업군 등 상이)					
	4	· 그 외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선택한 지원사업에 한함)					

o (신청제외 대상)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사전 지원 제외 대상 ※

- o 신청기업이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o 사업에서 정하는 신청의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ㅇ 참여의 제한을 받고 있거나 이의 조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사전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8조 4항_기타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ㅇ 기업의 부도
-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o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ㅇ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o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3. 세부 지원내용

○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항목) 총 2개 10건

구분	프로그램	지원항목	비고
	시제품 제작	Lab scale 검증이 완료된 리튬이온이차전지관련 소재·부품 실증을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 * 4대 핵심소재 및 전지 부품 실증 * 리튬이온이차전지 한정 * 전극(양극, 음극)제조, 전지조립 가능 1. 전극제조 양극, 음극 각 1종 최대 2개 1-1. 1Ah급 파우치형 전지조립 50개 또는 1-2. 코인형(Half cell) 전지조립 15개 * 울산TP가 보유한 장비 수준에서 지원 가능 * 소형 시험평가인증과 연계지원 가능 - 전극제조, 전지조립, 시험평가인증	6건
기술지원	시험평가 인증		4건
		* 시제품제작과 연계지원 불가능 * 충방전, 전기화학평가 - 전기차 배터리 모듈 평가 최대 2개	
		· 시험결과에 대한 3자 인증 성적서로 가능 * 공인효력 없음	

4.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현장조사(필요시)
 → 서류 및 발표평가

○ (평가항목)

구 분	위원구성	평가항목
성자면기	웨다 지어 보아이 괴려리	- 수행기업의 기업지원사업 수행 역량
현장평가	- 해당 사업 분야와 관련된	(기업 연구인력, 투자규모 등)
(필요시)	평가위원 1인 이상이 평가	- 기업지원 수행실적 및 연구개발,생산 환경 등
		- 사업계획의 필요성(목적의 명확성, 필요성 등)
		- 사업계획의 적정성(목표달성의 구체성 등)
니르면기	해당 사업 분야와 관련된	- 타당성(지원내용 등의 구체성 등)
서류평가	평가위원 5인이 평가	- 기대효과(지원제품의 사업화 등)
		- 기타(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등)
		- 울산 내 소재하거나 이전 예정인 중소기업 가점
		- 사업계획의 필요성(목적의 명확성, 필요성 등)
		- 사업계획의 적정성(목표달성의 구체성 등)
발표평가	- 해당 사업 분야와 관련된	- 타당성(지원내용 등의 구체성 등)
골표당기	평가위원 5인이 평가	- 기대효과(지원제품의 사업화 등)
		- 기타(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등)
		- 울산 내 소재하거나 이전 예정인 중소기업 가점

- ※ 현장평가는 기업에서 제출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시 진행하며, 서류와 발표평가는 동시 진행
- ㅇ (선정기준) 평가단계별 선정기준 기재

구 분	평가 종합평점 산출방법	선정기준
현장평가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으로 하되, 가점 및 감점을 포함하여 계산	·평가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기업 중
서류평가	· 최고 또는 최저점수 중 같은 점수가 2개 이상	상위기업부터 선정
발표평가	나올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제외하고 계산	

5. 추진일정

- ㅇ 신청서접수 : 2025년 1월 21일(화) 16:00 ~ 8월 29일(금) 18:00
 - ※ 해당기간동안 상시로 접수하며, 기업지원일정에 따라 신청접수 후 평가시마다 계획안 작성하여 기업지원선정평가 진행예정

ㅇ 선정평가 추진일정

	초안 접수	\Rightarrow	시스템 접수		현장 조사	\bigcap	서류 및 발표평가	合	선정 통보	\Rightarrow	협얍 체결
'25. 1. 21. ~ 8. 29.	 담당자 협의		′25. 1. 21. ~ 8. 29.		필요시 별도안내		별도안내		별도안내		일정협의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5. 1. 21.(화요일) ~ 8. 29.(금요일)
- o (접수기간) 2025. 1. 21.(화요일) ~ 8. 29.(금요일) 18:00 까지
- o (신청방법) 울산TP 홈페이지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
- (신청·접수처) U BiZ platform을 통한 인터넷 접수
 * 접수 전 회원가입 사전 진행 필수

7. 제출서류

제출서류				
① 신청서	원본			
② 세부계획서	사본			
③ 기업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원본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마케팅 활용 동의서	원본			
⑤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⑥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을 통한 울산지역 내 기업 확인으로 선정 가산점	사본	필수		
⑦ 최근 3년간('22-'24) 재무제표(원본대조필 날인 요망) * 재무제표 미발행시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 (가결산도 불가할 시 부가세납입증명을 회계사무소 날인 후 제출)	사본			
⑧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제출기한내)	사본			
⑨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사본			
 ① 기업역량 확인 가능한 서류(선정평가 시 활용) - 벤처기업지정서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 MAINBIZ/INNOBIZ 인증서 -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등) 등록증 또는 출원증 - 국내외 표준인증서(시스템인증, 제품인증 등) - 기타 기업역량 확인 서류 	사본	해당 시		
⑪ 중소기업확인서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9.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 지침 및 관련 법령,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수 있음
- o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10. 이의신청

- ㅇ 이의신청의 범위
 - (이의신청 가능 사항)
 - ①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
 - ② 과제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 ③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 등
 -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이 가능
 - (이의신청 불가 사항) 아래의 사안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
 - ① 선정결과 통보
 - ② 평가위원 선정
 - ③ 사업비 결정
 - ④ 평가규정 및 절차
 - ⑤ 평가방식(서류/발표/현장) 등
- ㅇ 이의신청 방법
 - (신청기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 5일 :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 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 (제출방법) [붙임 2. 이의신청서] 작성 후 공문과 함께 이메일 (주소: daehyunkwon@utp.or.kr)을 통하여 제출
 - (작성방법) 신청기업(기관) 혹은 신청자 명의의 공문과 신청인 인적사항, 통보일,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명확하게 이의신청서에 적어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유의사항)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평가, 대면평가 등 과제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 절차가 완료된 후에 1회만 가능

- **11. 관련법규**(※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지원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관련규정)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 관리지침

12. 문의처

구분	담당자	소속	연락처	이메일
담당자	권대현	이차전지 기술지원본부	052-219-0944	daehyunkown@utp.or.kr

붙임 1. 사업신청서 양식 1부. 끝

붙임 2. 이의신청서